

의안  
번호

292

서울특별시 성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4. 06. 04.  
전문위원 김 동 성

1. 제안경위

- 가.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- 나. 의안번호 : 제292호
- 다. 제출일자 : 2024. 05. 23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05. 28.

2. 제안이유

- 성북구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목적과 학교 및 입학준비금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지원범위, 지원대상, 지원금액,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6조)
- 다. 환수(안 제7조)
- 라. 다른 기관과의 협력(안 제8조)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교육기본법」,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- 다. 입법예고
  - 기 간 : 2024. 4. 18. ~ 5. 8. (20일간)
  - 의 견 : 의견 없음.

## 5. 검토의견

### □ 개요

-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소재하는 초·중·고등학교(고등기술, 특수, 각종학교 포함)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교육여건 격차의 최소화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 본 제정안은 8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은 2021년부터 서울시교육청·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협력하여 ‘초·중·고’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(교복, 의류, 도서, 안경, 전자기기 등)을 자율적으로 직접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임. 성북구 입학준비금 연도별 지원실적과 2024년도 입학준비금 지원대상 및 분담액은 아래와 같음.

#### <연도별 지원실적>

(단위 : 천원)

| 구분    | 지원대상  | 학생수   | 총 지원액     | 분담액       |         |         | 비고 |
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|
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   | 교육청       | 서울시     | 성북구     |    |
| 2023년 | 초·중·고 | 9,028 | 2,400,100 | 1,138,390 | 720,030 | 541,680 |    |
| 2022년 | 초·중·고 | 9,077 | 2,391,800 | 1,129,640 | 717,540 | 544,620 |    |
| 2021년 | 중·고   | 6,414 | 1,953,005 | 976,503   | 585,901 | 390,601 |    |

#### <2024년도 입학준비금 지원대상 및 분담액>

(단위 : 천원)

| 구분  | 학생수<br>(명) | 1인당<br>지원액 | 총<br>지원액  | 교육청  |           | 서울시  |         | 성북구  |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|
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분담비율 | 분담액       | 분담비율 | 분담액     | 분담비율 | 분담액     |
| 초   | 2,644      | 20만원       | 528,800   | 40%  | 211,520   | 30%  | 158,640 | 30%  | 158,640 |
| 중·고 | 5,674      | 30만원       | 1,702,200 | 50%  | 851,100   | 30%  | 510,660 | 20%  | 340,440 |
| 계   | 8,318      |            | 2,231,000 |      | 1,062,620 |      | 669,300 |      | 499,080 |

## □ 주요내용

-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학교 및 입학준비금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3조와 제4조는 입학준비금의 지원 및 대상을 우리 구에 소재하는 초·중·고등학교,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외에서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등으로 규정함.
- 안 제5조는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,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입학준비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,
-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원절차 및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, 중복 지원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 조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고,
- 안 제8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때는 지원대상, 금액, 방법 등에 관하여 합의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.

## □ 종합의견

- 이상과 같이 본 제정안은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시, 25개 자치구가 합의하여 추진하는 교육복지사업인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의 근거 조례를 마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 됨.
- 다만, 안 제4조제2호 조문 중 제1호는 ‘지원대상인 학생’을 규정하는 조항이므로 ‘학교’를 지칭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 됨.

**< 수정안 >**

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 정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제4조(지원대상)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.</p> <p>2. 타 시·도 또는 국외에서 <u>제1호</u> <u>에 해당하는 학교로</u> 전입하는 1학년 학생</p> | <p>제4조(지원대상)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.</p> <p>2. 타 시·도 또는 국외에서 <u>구 소재 학교로</u> 전입하는 1학년 학생</p> |